

◎ 국방 회계장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국가의 역사적 이해: 『조선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조영준, 2016)

왕실의 회계장부가 이토록 흥미진진한 기록이었는가? 숫자에 극히 취약한 사상사 전공자로서, 처음에는 토론을 맡긴 분을 원망하였다. 수많은 표와 표목을 구성하고 있는 사료 속의 고유명사들은, 과연 ‘과거는 낫선 나라’임을 상기시키며 독서의 문턱을 높였다. 그러나 분석대상(궁방), 지표(궁방면세결총수), 자료(왕실 회계장부 ‘3책’)를 검증하며 객관적 연구설계를 제시하는 지난한 앞부분을 지나가면, 개인적으로 이 책의 백미라고 느껴진 5장(붉은 팔)과 6장(소고기)이 기다리고 있다.

각 장의 내용

이 책은, 서론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듯,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형태의 자료로서 조선 왕실의 방대한 회계기록을 발굴, 소개, 분석한 첫 시도이다. 시각적으로는, 조선후기 경제에 대한 위로부터의, 왕실로부터의 접근 시각을 견지하였고, 계량분석과 고문학을 결합한 연구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정부재정과 구별되는 왕실재정의 핵심으로서 ‘내탕(內帑)’에 주목,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달 기관으로서 18세기 이래 1907년까지 존속되었던 1사(내수사) 4궁(수진궁, 명례궁, 용동궁, 어의궁)을 분석하고 있다.

1장에서는, 분석대상인 궁방에 ‘조선 후기’라는 시대적 범주(직전법이 폐지되고 면세결인 궁방전 창출되는 임란 이후)와 ‘조달기관’(내탕, 종실재정, 제향 기능 중 일개 사장이 아닌 공적 재정을 보완하는 내탕의 의미)이라는 기능적 범주를 설정한 뒤, “궁방들은 상시적 인력, 직책, 건물을 보유한 실체로서 존재한 왕실재정의 운영주체”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50)

2장에서는, 궁방의 핵심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으로서 궁방전 수세 문제를 다루면서, 그 지표로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궁방면세결총을 수량분석하여 시계열적 변동 추세를 제시한다. 후기로 갈수록 영구존속궁인 1사4궁에 면세결이 집중되는 가운데, 세자사친궁 이하의 비영구존속궁에서는 면세결 지급 규정이 준수되는 반면, 영구존속궁에서는 궁방전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규정이 실효성이 없었다. 1776년 정조(궁방전 3/1 출세 전환 호조 이속), 1823년 순조(궁방면세결총 감축)에 의해 궁방전 개혁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개혁의 대상은 비영구존속궁에 한정되었으며, 궁방전 개혁의 정도와 방향성은 제도보다 왕실 의지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 1860년-1874년 대원군의 궁방전 개혁으로 궁방면세결총이 급감하지만, 왕실 내탕인 내수사와 4궁은 여전히 법전 규정을 상회 면세결 보유하고 있었으며, 왕실 내탕이 존속,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채용 절약이라는 원래 개혁의 취지 달성에 한계를 드러낸다.

3장에서는 왕실 회계장부의 체계와 생산 과정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궁방의 회계장부는 받자

책(수입)-차하책(지출)-회계책(수지, 재고) 3책으로 구성된다. 현금이 아닌 물품출납장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초본→중초본→정서본으로 다단계의 작성을 거치면서 수지의 내역이 확정되는, 제도적 정밀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방 회계장부 결재 라인에는 관아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해당 전.궁에서만 재정 수지가 파악되는 비공식적 측면이 내재해 있었다.

4장에서는, 왕실의 조달 관련 문서와 기록들을 왕실 ‘내부’ 문서(내서, 내첩, 표지, 무역발기)와 왕실과 시전 간의 ‘외부’ 문서(체지, 표)로 대별하고, 이를 통해 왕실의 조달 절차와 경로를 재구성하고 있다.(165 그림 4-14)

5장에서는 1878년부터 1906년까지 내수사 호방 차하책과 시전 잡곡전 진배문서의 교차 대조를 통해, 왕실의 재정지출과 서울상업의 일면을 들여다본다. “내수사와 시전 간 거래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19세기 후반 시전체제가 가지는 특성을 왕실재정의 위기와 연계하여 파악”(172)하겠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지팔죽 재료인 ‘붉은 팥’ 조달 문제라는 사례 선정이 매우 흥미롭다. 필자는 “1사4궁 또는 각 아문과 시전간 거래가 국역(國役)으로서 역업적 성격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장기 균형 달성”(171)하고 있었다고 전제하며, 다만 이러한 균형상태는 국가 및 왕실 재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만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19세 전반 세도정권기 이후 시전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정책적 모순이 국가재정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국가재정의 구조적 위기는 ‘선진배 후수가’ 관행에 따른 외상누적으로 시전에 전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879년대 후반부터 1894년까지 호방의 잡곡전에 대한 미하액 누적이 불가역적으로 고착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채권 보유한 잡곡전의 실부담은 더욱 증대되었다. 정부재정 영역에서는 갑오개혁기 공민들에게 미하금이 지급되었지만, 1사4궁의 내탕 영역은 정부재정과 별도로 왕실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1907년 폐지될 때까지 외상값이 지불되지 않다가, 보호국기 일본인들의 제실채무과정에서 비로소 부분 보전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6장에서는, 왕실에 소고기를 공급한 상업주체 현방(懸房; 다림방) 상인 안기양의 회계장부 『안기양일기장』과 『수진궁차하책』의 교차 대조를 통해, 왕실의 재정지출과 서울상업 관계의 또다른 사례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안기양일기장은 5장보다 후대인 갑오개혁 이후 궁방 및 제실재산의 해체기(1902.10~1908.1)의 자료로서, “관찬연대기가 아닌, 공급측인 현방의 경영실태와 수요측인 왕실 및 사대부가의 소비실태에 대한 미시분석”과 “소고기라는 특정 재화에 대한 서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218)

7장에서는 『수진궁차하책』의 분석을 통해, 왕실재정의 위기와 전가 문제를 다루었다. 수진궁은 1870년대부터 전답 수입 비중이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왕실이 내리는 하사인 ‘내하(內下)’(내하의 원천에 관한 273 각주 31의 화폐발행 주조차의 가설은 중요해 보인다.)에 의 의존도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내하금 지급의 상시화는 모든 궁방에 대한 공통적 현상이었다. 또 수진궁은 만성적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궁속의 급여인 향미를 전용하고 연체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입(內入)’ 지출항목, 즉 왕실의 일상적, 의례적 소비가 지속된 것이 수진궁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했으며, 이것은 궁속의 향미 전용, 판매상인에 대한 외상값인 ‘상채(償債)’, 조달 무역노의 ‘입체금(立替金)’이라는 형태로 전가되었다.

책의 가치

이 책의 가치는 매우 뚜렷하다. 첫째, 국가와 시민사회, 정부와 시장,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근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재정 사료를 분석하여 조선 시대 왕조 국가의 역사적 실상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공과 사의 중간적 영역과 존재들이 드러났다. 왕실의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출영역인 ‘내탕(內帑)’, 왕실의 ‘사적’ 재정기관 내지 조달기관으로서의 궁방, 국역의 일종으로 자유로운 매매행위는 아니었지만, 일정한 이윤 획득의 통로가 된 궁방과 시전 간 거래인 ‘진배’, 왕실로부터 독점적 특권을 받는 동시에 재정 위험을 전가받았던 왕실의 ‘동반자’들 등이 그것이다.

둘째, 조선 후기 개별 경제 주체와 영역들에 대한 사례연구 기술에 그치지 않고, 체계와 구조, 시계열적 변동에 대한 강렬한 감수성을 보여준다. 이행기의 양상들, 구조에서 과정으로. (ex. 소고기 공급자로서의 현방. 시전에 준하는 국가에 의한 통제객체였다가 갑오개혁 이후 난립되면서 사상(私商)화되어가는 모습) 그 이면에는 이 시기를 전공하는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한국의 근대적 전화, 근대 이행, 근대화’에 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으리라. 그런데 책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이 거시적 문제의식을 미시적 자료들의 발굴과 연계, 수량분석을 통해 중범위적 연구설계로 구현해 냈다는 점이다. 근대이행기 전통 국가의 구조적 위기를 재정 위기의 측면에서 접근, 이를 보여줄 미시적 지표를 문헌 자료에서 추출했기 때문이다.

셋째, 필자가 밝힌 것처럼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병행하는...실증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 기록 및 장부를 얼마나 치밀하게 상호 연계시켜 해석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139) 필자는 관찬기록이 아닌 궁방과 시전의 회계장부라는 중범위적 1차 기록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해석했다. 나아가, 흩어져 있는 기록들의 관련성을 찾아 병치시키고, 회계장부 내역에서 명목액을 집계, 실질액으로 환산하고, 시계열적 변동 추이를 고찰하였다. (ex.7장 3절. 실물 회계장부를 동전으로 환산하는 작업. 1894년 7월 신식화폐발행장정 이후의 장부상 가격을 실질액으로 환산하는 작업) “풍속학에서 풀기보다도 경제학에서 풀어야 할 것”(164)을 풀기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 거래관행의 문헌 천착을 통해 거래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이러한 제반 과정이 요구하는 연구자의 사료 장악력,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 보이며, 필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몇 가지 질문

조선시대 정부재정과 왕실재정이 불가분했다는 필자의 지적에 매우 공감한다. 후대의 관점에서 비판하자면, ‘국(國)’으로서의 조정과 ‘가(家)’로서의 왕실이 분리되지 않으며, 법적 규율에서 제외되는 왕실의 특권이 ‘전근대’ 전제왕정의 구조적 위기를 야기한 폐해이자 ‘근대적’ 절대왕정이나 계몽군주정과의 차이라고 입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왕실의 내탕을 조달한 영구존속공의 면세결 보유가 법규와 제도 바깥에서 왕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지적한 2장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듯도 보인다. 그런데, “내수사와 궁방의 재정은 왕실의 ‘사적인’ 영역”이

라고 한다면, 왕조국가에서 공과 사, 왕실(재정)과 정부(재정)의 분리가 가능한가? 그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예를 들어, 궁방의 (1)내탕 (2)왕족 재정 (3)제향 기능 가운데 “왕실재정 본연의 기능은 오직 내탕의 기능”(25)이라는 전제에서, 내탕과 왕실 일족의 생활자료 공급과 제향이 배타적으로 구별이 가능한가? 이는 자료처리라는 미시적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왕조국가의 본질에 대한 이해라는 더 큰 문제(의례국가, 중세 왕권의 정치신학)와도 연결된다. 책 말미의 <보론. 수진궁의 연원과 제향 업무>는 이와 관련된 작업 아닌지?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중간층의 확대와 상업 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발달에 저해가 되었던 조선 왕조와 이를 촉진한 합리적 식민 행정부(‘식민지 근대화’론)로 거칠게 정리될 위험이 있다. 물론, 이 책의 주장은 그보다 훨씬 섬세하다. 왕실과 동반자적 관계(왕실의 비호에 기댄 특혜적, 독점적 존재)를 유지했던 궁속, 무역노, 시전 상인들은 왕실 재정 위기와 함께 몰락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1870년대부터 국가재정의 구조적 위기에서, 왕실재정의 적자가 근본적 비용 절감과 제도적 정비 없이, 왕실 하속배와 서울 상인에게 재분배된 것을 비판하였다. 또, “‘전통’상인이 ‘근대적’ 자본가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며, “자본의 축적 여건이 충실한 상황이었다면, 축적된 상업 자본을 토대로 소위 산업자본가로 전화하기 쉬웠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43)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외상국가’, 수탈자로서 왕조 전제국가의 이미지는 1908년 일본인이 제실 재산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미하금을 일부 변제해 줌으로써 더 대비적으로 강조된다. 예를 들어, 호조, 선혜청 등 정부 재정기관의 미하는 갑오개혁 시기에 일괄 지급되었지만, 1사4궁의 미하액 적체는 1894년 이후 1906년까지 방치되다가, 1907년 이후 일본인들의 제실채무 정리 과정에서 부분 해소. 청구 총액의 3할을 애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208-209) 그러나 1895년 시행한 회계법 의해 밀린 채권을 소멸시키고, 객관적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통적 거래관행을 부인하는 ‘법적 보장’의 이면에는, 왕조국가가 담보하던 권리의 식민국가에 의한 부인(박탈)이 존재하지 않는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자유주의적 제국주의(liberal imperialism)’의 법적 장치들과 정치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서는 일련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들 중 중요한 일부분은 보호국기 일본인들의 제실채무 정리과정에서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미하금 청구자료의 일환이다. 과연 이러한 기록으로 재구성된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며, 다음의 해석(왕조국가에서 억압, 검열되었던 개인의 권리가 식민국가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로 구현됨)은 고민 없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장기간 미하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왕실에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왕실의 권위가 유명무실해진 보호국기에 들어서 채권의 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왕실과 시전 간의 관계가 국역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특권으로 맺어진 동반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210), “시전과 왕실 간의 관계에서 왕실은...주종 관계로 우위를 점하여 독점적 고객으로 자리...따라서 왕실 채무에 대해서는 함구”(211)